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서

☆사상구건강가정・다문화가족지원센터♥

1. 예산 총칙

1조(예산의 규모) 2021 제1회 추가경정 세입·세출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.

예산총액 (: 천원)

구	보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	계	2,936,168	2,934,199	1,969	0.07%

O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936,168	2,934,199	1,969	0.07%
사 업 수 입	539,392	539,652	△260	-0.05%
보조금 수입	2,356,937	2,368,323	△11,386	-0.48%
후원금 수입	1,500	1,500	0	0
전 입 금	7,000	7,000	0	0
이 월 금	31,329	17,714	13,615	76.86%
잡 수 입	10	10	0	0

(: 천원)

구 분	예산액(1차추경)	기정예산액(본예산)	증감액	증감률
총 계	2,936,168	2,934,199	1,969	0.07%
사 무 비	363,342	367,972	△4,630	-1.26%
재 산 조성비	0	1,000	△1,000	-100.00%
사 업 비	2,542,942	2,548,214	△5,272	-0.21%
잡 지 출	0	0	0	0
예비비및기타	29,884	17,013	12,871	75.65%

제2조(예산의 내역)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·세출의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제3조(추가경정예산) 추경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제4조(예산의 전용) ① 예산의 관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.

- ② 예산의 항간 전용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되, 100만원 이하의 예산 변경 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- ③ 예산의 목간 전용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전용할 수 있다.
- 제5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지출 초과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 예산 의 1% 내외를 예비비로 계상한다.
 - ②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6조(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) 예산의 편성·집행·회계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「사회복지 시설 관리안내」지침을 준용한다.